



주목할 만한 내용:

01. 조세 행정 (“Tax Administration”)

- 재무부 (“MOF”)는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조세행정법 및 제123/2020/ND-CP호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는 제 126/2020/ND-CP호 시행령을 보완하는 시행령 초안을 작성함
- 기업, 협동조합 및 가족사업자의 회복지원을 위해 세금, 수수료 및 요금의 면제 및 감면, 납세 기한 연장에 관한 정부의 결의

02.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 보상금 소득에 대한 CIT 인센티브
- 물품 폐기 비용은 공제 불가능

03. 간접세 (“ Indirect Tax”)

- 서비스 및 상품 수출에 VAT 계산서 사용
- 확장프로젝트에 대한 VAT환급

04. 외국인계약자세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

- 국제 팩토링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계약자세 (“FCWT”)
- 서비스를 수반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FCWT

05.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및 보험

- 모회사가 대신하여 지급한 급여에 대해 PIT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
- 신규 의료보험 카드 (“HI 카드”) 발행

06. 무역 및 관세 (“Trade & Customs”)

- 상품 수입 후 로열티 수수료 추가 신고
- 제조수출용으로 A12로 수입한 물품이 가공 위탁되는 경우, 관세 환급 대상 제외
- VAT 면제, 감면 정책 및 수입 단계에서 시행 지침

조세행정



기타

재무부 ("MOF")는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조세행정법 및 제123/2020/ND-CP호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는 제126/2020/ND-CP호 시행령을 보완하는 시행령 초안을 작성함

재무부는 시행령 초안에서 최근 납세자의 의무 수행을 촉진하며 어려움을 완화하고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몇 가지의 주요 수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구매자를 대신하여 세금 신고, 납세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전자 상거래 플랫폼 소유자의 의무 수정 및 보완
- 3분기에 75%의 법인세 잠정 납부에 관한 규정 수정: 시행령 초안은 04분기의 잠정 납부 법인세액이 해당 연도의 확정신고에 따른 세액의 80% 미만이면 안 된 것으로 수정한다. 이 수정규정은 2021년의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재무부의 시행령 초안)

기업, 협동조합 및 가족사업자의 회복지원을 위해 세금, 수수료 및 요금의 면제 및 감면, 납세 기한 연장에 관한 정부의 결의

정부는 2022년1월30일 사회경제적 회복 및 발전 프로그램에 관한 제11/NQ-CP호 결의를 발표하며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및 통화 정책에 관한 국회의 제 43/2022/QH15호 결의를 실행한다.

그중에 2022년의 세금, 수수료 및 요금 면제 및 감면; 납세 기한 연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해결책이 포함된다:

- 현재 VAT 10% 이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정부의 제15/2022/ND-CP호 시행령에서 규정됨)(*) 는 VAT세율 2%를 감면
-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기업의 기부금 및 후원금 (정부의 제15/2022/ND-CP호 시행령에서 규정됨)(*) 을 세무상 공제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허용
- 제13/2021/UBTVQH15호 결의에 따라 비행기 연료에 대한 환경보호세를 50% 감면

- 2022년의 토지 및 수면 임대료를 30% 감면
- 제101/2021/ND-CP호 시행령에 따라 신규 수출입 관세율을 적용
- 제103/2021/ND-CP호 시행령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자동차 등록비의 50% 감면
- 2022년의 법인세 ("CIT"), 개인소득세 ("PIT"), 부가가치세 ("VAT"), 특별소비세 ("SCT") 및 토지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 (현재 재무부는 관련 시행령 초안 작성 중)

(정부의 2022년 1월 30일 제11/NQ-CP호 결의)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지침 문서

법인소득세



보상금 소득에 대한 CIT 인센티브

기업이 지역별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 받고 있는 경우 지역별 인센티브를 받는 투자 프로젝트의 모든 매입 원자재를 다 사용하지 않으므로 고액한태서 계약 위반에 대해 받은 보상금 소득은 규정에 따라 법인세 인센티브도 적용 받을 수 있다.

(하이퐁 세무국의 2022년 1월 21일 제194/CTHPH-TTHT호 OL)

물품 폐기 비용은 공제 불가능

회사가 보건부의 통보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통 중단 및 폐기되어 야 하는 물품이 있으면 해당 물품을 폐기하기 위한 발생 비용은 불가항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상 공제가 불가능하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2년 2월 11일 제 1827/CTBDU-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간접세



지침 문서

서비스 및 상품 수출에 VAT 계산서 사용

회사가 제123/2020/ND-CP호 시행령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공제 방식으로 VAT를 신고하는 경우 해외로 서비스 및 상품 수출에 대하여 VAT 계산서를 사용한다.

계산서상 기재된 통화는 외화로 표시되며 판매자가 계산서상 외화를 베트남동으로 환전을 위한 적용환율을 표기해야 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2년 1월 28일 제 4251/CTHN-TTHT호 OL)

확장프로젝트에 대한 VAT환급

기업이 다단계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수익이 발생하는 투자 완료 항목의 경우 수익 발생 시점 이후에 발생한 매입 VAT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수익 발생 시점 이전에 발생한 매입 VAT는 재무부의 2016년 12월 8일 제130/2016/TT-BTC호 시행규칙 제 1조 3항에 의한 손금산입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투자 중인 항목의 경우, 투자 프로젝트의 매입 VAT를 제02/GTGT호 표준양식으로 신고하고 제01/GTGT호 표준양식에 의해 신고된 진행중인 생산 및 사업 활동의 VAT와 상계한다. 투자 프로젝트의 매입VAT가 전액 공제되지 않은 경우, 재무부의 제30/2016/TT-BTC호 시행령(2016년 8월 12일) 제1조 3항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2년 1월 21일 제1068/CTBDU-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외국인계약자세



지침 문서

국제 팩토링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계약자세 (“FCWT”)

베트남 회사 (판매자)가 미국고객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이에 따라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양측은 미국에 위치한 신용 기관의 국제 팩토링 서비스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판매자가 기한 전에 결제를 요청해서 신용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 경우 신용기관의 이에 대한 소득은 베트남 FCWT가 부과된다. 이는 법규정에 따라 국제 팩토링 서비스로 확인되면 판매자가 FCWT를 원천징수하고 신용기관을 대신하여 신고.납부할 책임이 있다. 구체적으로:

- VAT: 국제 팩토링 서비스는 VAT가 부과되지 않다
- CIT: CIT과세소득의 5%

(Hai Phong 세무국의 2022년 1월 27일 제290/CTHPH-TTHT호 OL)

서비스를 수반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FCWT

베트남 회사는 외국인계약자와 베트남에서 수행된 서비스를 수반하는 기계 및 장비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상 수입 기계의 가치 및 서비스의 가치를 분리할 수 있으면 회사가 아래와 같이 FCWT를 원천징수하여 외국인 계약자를 대신하여 신고.납부한다.

- VAT :
 - 상품: 수입 단계에 VAT만 부과된다.
 - 서비스: 매출액의 5%

외국 계약자 대신 납부된 VAT 금액은 공제조건을 충족하면 신고.공제될 수 있고 CIT 목적상 공제 불가능한 비용으로 처리된다.

- CIT :
 - 수입 기계 및 운송료의 가치: 매출액의 1%
 - 서비스: 매출액의 5%

외국인계약자 대신 납부된 CIT 금액은 규정조건을 충족하면 CIT 목적상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된다.

(Long An 세무국의 2022년 2월 15일 제 303 / CTLAN-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개인소득세 및 보험



지침 문서

모회사가 대신하여 지급한 급여에 대해 PIT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

베트남회사가 해외 모회사에서 파견된 일본인 주재원을 사용한 경우 베트남회사와 일본 모회사간의 합의서상 주재원의 급여가 베트남 회사에 의해 전액 부담된다 (모회사가 일본에서 주재원에게 지급한 부분을 포함; 베트남회사가 일본모회사에 상환함). 주재원이 다른 곳에서 일을 겸직하지 않고 이회사에서만 근로소득을 받으면 회사가 외국인 주재원에게 지급한 총 과세소득에 대해 PIT 원천징수, 신고, 납부할 책임이 있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 12월 13일 제53948/CTHN-TTHT호 OL)

신규 의료보험 카드 ("HI 카드") 발행

호치민 사회보험국은 2022년2월11일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에 2020년 12월 3일 제 1666/QD-BHXH호 결정문에 따라 신규 의료보험 카드를 발급한다.

- 신규 가입자에게 의료보험카드 새로 발급;
- 의료보험카드의 분실, 훼손, 정보 변경 등으로 인한 의료보험카드 재발급

2022년 2월 11일 이전에 발급된 의료보험카드가 신규 신규카드와 같이 사용되며 동등한 가치가 있다.

(호치민시 사회보험국의 2022년02월11일 제519/BHXH-CS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상품 수입 후 로열티 수수료 추가 신고

관세총국은 여러 수입 신고서에 해당하는 로열티 수수료를 추가 신고에 관해 안내하는 OL을 공표하였다. 구체적으로:

로열티 수수료가 해당 수수료와 연관된 수입 상품에 온전히 배분되는 경우, 기업은 한번의 추가 신고로 해당 기간에 발생한 모든 신고에 대한 추가 신고를 할 수 있다.

기업은 다음의 관세지국 중 하나에서 추가 신고할 수 있다.

- 최초 수입 신고서가 등록된 관세지국 또는
- 세관 신고가 가장 많이 등록된 관세지국

(관세총국의 2022년 1월 24일 제279/TCHQ-TXNK호 OL)

제조수출용으로 A12로 수입한 물품이 가공 위탁되는 경우, 관세 환급 대상 제외

제134/2016/ND-CP호 시행령 제36조 1항에 따라 생산 및 무역 목적으로 수입되었지만 제조수출용으로 사용되고 완제품을 실제로 수출한 경우 납부된 관세를 환급받는다.

그러나 제134/2016/ND-CP호 시행령 제36조 3항에 근거하여 기업이 생산용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수입 관세를 납부하였으나 직접 생산하지 않고 모든 수입 물품을 다른 기업에 가공을 위탁하여 가공 상품을 수령한 후 해외로 수출한 경우 규정에 따라 관세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관세총국의 2022년 1월 17일 수입 관세 환급에 관한 제 185/TCHQ-TXNK호 OL)

제조수출용 수입/내수구매 원자재를 외국 기업에게 판매

1. E31 로 수입된 원자재의 경우

제조수출용 수입된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해외로 판매하는 경우 수출하기 전에 사용 목적 변경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2. 제조수출용으로 국내에서 구매한 원자재의 경우

외국투자법인이 수출 권리에 따라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경우, B11로 세관 신고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에 따라 수출이 금지되거나 일시적으로 수출이 금지된 상품 목록에 없는 상품

- 수출 허가 또는 요건이 존재하는 물품의 경우, 외국투자법인은 해당 허가 또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호치민 관세국의 2022년 1월 12일 제86/HQTPHCM-GSQL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VAT 면제, 감면 정책 및 수입 단계에서 시행 지침

1. VAT 면제, 감면 정책

2022년 1월 28일에 정부는 제43/2022/QH15호 결의서에 따라 세금 감면 및 면제에 관한 제15/2022/ND-CP호 시행령 ("제15호 시행령")을 공표하였다. 제15호 시행령의 자세한 사항은 Deloitte 사이트에 업데이트 되었으며 이 [링크](#)에서 참조하십시오.

2. 수입 단계에서 제15호 시행령 적용

관세총국은 수입 단계에서 제15호 시행령의 적용에 대한 지침을 공표하였다. 구체적으로:

- VAT 감면 대상이 아닌 상품 및 서비스 목록에 속한 수입 물품은 부록 I의 (8)열 "제품명", (9) 열 "내용" 및 부록III의 A부분; B부분의 3열 "제품", 및 부록 II의 소비세가 부과된 수입 물품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VAT 10% 세율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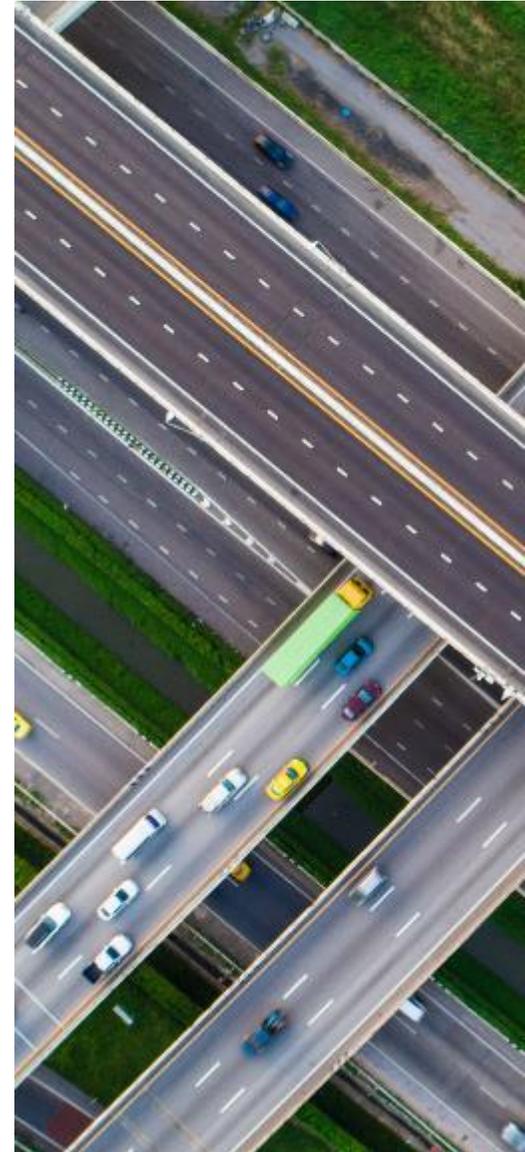
- 부록 I 및 부록 III에서 상품의 HS 코드의 결정은 류(02자리), 호(04자리), 소호(06자리) 및 세부코드(08자리)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류가 4단위 호와 함께 목록에 있지만 소호나 세부코드가 없는 경우, 해당 4단위 호에 속하는 모든 8자리 HS 코드는 VAT 10%가 적용된다. 이 원칙은 류, 소호, 세부코드에 적용된다.
- 부록 I 열(10), A부분의 열 (10) 및 부록 III B부분 열(4)에서 별표(*)가 있는 행의 경우, 실제 수입 물품에 따라 HS 코드를 신고한다.
- 수입 신고 시 VAT 8%를 신고하려면 코드 VB195를 선택해야 한다.
- 2022년 2월 1일 새벽 0시부터 등록된 세관 신고서만 VAT 감면 가능하다.

(관세총국의2022년 1월 28일 제370/TCHQ-TXNK호 OL 및 2022년 2월 18일 제521/TCHQ-TXNK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Park Eun Sil
Tax Manager
+84 90 220 4587
eunsiipark@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since 1845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